

의안 번호	226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2.(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2.(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5. 20.(월)

2. 제안이유

-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 (당초)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기재
 - (변경)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을 추가 기재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한 규정 정정(안 제4조 제2항)
 - (당초) 영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 폐지
 - (변경) 영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 법 제16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는 심의를 하여야 함.

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일 변경(안 제16조)

- (당초) 기부채납일 → (변경) 사용허가를 받은 날

※ 법 제21조제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 로 부터로 명시됨.

라.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4.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